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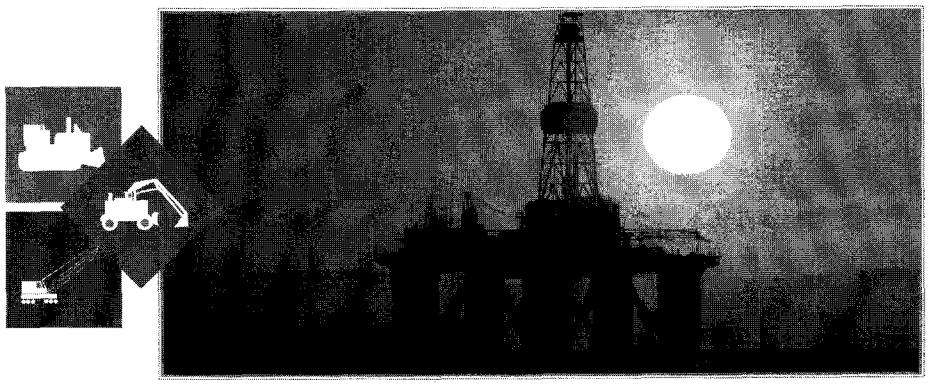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7. ~ 13. (생 략)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개 정 안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 13.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

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

②

------시·도지사----------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시·도지사는 건설업의

---.

②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

----------.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4.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②건설업자

----------.

----------.

③시·도지사

----------.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건설업자

----------.

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④ (생 략)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삭 제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고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
----------.

②----------
----------건설업자
----------.
----------.

③건설업자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자

----------시·도지사
----------.
경우

2. 건설업자----------건설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건설업 ----------. ----------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 ---------- ----------.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 ---------- ----------. ----------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삭 제〉
2.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③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 ---------- ---------- ---------- ---------- ----------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경영실태·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수급상황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 ----------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건설사업관리자 ----------.

②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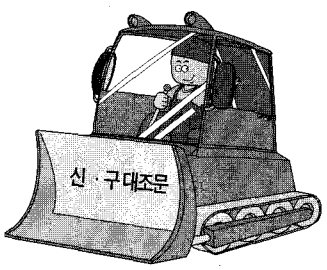
---------- 건설사업관리 자----------